

대통령령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국방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금융교육협의회) ① 법 제 31조제5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.	제28조(금융교육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9. 국방부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524